

2010. 5. 6

# 기타안건 심사보고서

- 충주신산업단지 개발사업 -

시행자(SPC) 설립에 따른 자본금 출자 동의안

산업건설위원회

# 기타안건 심사보고서

## 1. 심사경과

안 건 명	제 안 일자	회 부 일자	상 정 일자	의 결 일자	제안설명	비고
충주신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 설립에 따른 자본금 출자 동의안	2010. 4.27	2010. 4.27	2010. 5. 4	2010. 5. 4	지역개발 과장	

## 2. 제안설명요지

- 충주기업도시, 첨단산업단지와의 연계를 통해 첨단지식산업벨트를 구축하고 충주시 이주 희망업체에 대한 안정적인 산업용지 공급을 위해 추진하는 충주신산업단지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될 특수목적법인(SPC)에 충주시가 출자를 통하여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시행자로 참여하고자 하는 것으로
-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 제2항에 의거 지방의회에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임

## 3. 주요내용

### 가. 사업개요

- 사 업 명 : 충주신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

- 위 치 : 충주시 주덕읍, 이류면 일원
- 면 적 : 2,379,231m<sup>2</sup>(약 72만 6천평)
- 총사업비 : 약 1,900억원
- 자 본 금 : 200억원

#### 나. 출자규모

- 참여업체 : 충주시, 참여희망업체
- 충주시 출자액 : 10억원(5%, 현금출자)

### 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이 동의안은 충주시에서 기업도시와 연접하여 조성하고자 하는 “충주 신산업단지” 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초기 자본금으로 10억원(총자본금 200억원)을 현금 출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충주시는 본 안건과 동일한 형태의 특수목적법인을 2006년 ‘충주 기업도시’ 건설 사업시 구성한 예가 있음.(출자금 20억원, 현금출자)

“충주신산업단지” 조성은 기업도시의 산업용지 부족을 해소하여 기업도시를 활성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연접하고 있는 기업 도시, 첨단산업단지와 클러스터화되어 충주시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인구 30만 도시 건설에 중추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사업이라 보여짐

본 안건인 충주시 출자 의결 주문과 관련하여 사전절차 이행 상황 및 주요 사안별 내용을 살펴보면

## 1. 자치단체의 특수목적법인 출자 가능 여부

「지방공기업법」 제77조의3(설립)<sup>1)</sup> 은 지방자치단체가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출자를 통하여 주식회사 또는 재단법인의 설립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,

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 제1항<sup>2)</sup>에서는 「지방공기업법」 제2조<sup>3)</sup>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(본건은 토지개발사업 해당) 추진에 있어서는 출자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,

##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16조 제1항<sup>4)</sup> 에서는 지방자치

---

1) 제77조의3 (설립) ①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2분의 1 미만을 출자 또는 출연하여 지방자치단체외의 자(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)와 공동으로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(이하 "출자법인"이라 한다) 또는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(이하 "출연법인"이라 한다)을 설립·운영할 수 있다

2) 제18조(출자의 제한) ①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할 수 있도록 정하여진 단체, 「지방공기업법」에 의한 지방공사·지방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의 법인 외의 단체에 대하여는 출자를 할 수 없다. 다만, 지방자치단체가 「지방공기업법」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공동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3) 제2조 (적용범위) ①이 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(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·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(이하 "지방직영기업"이라 한다)과 제3장 및 제4장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.

### 8. 토지개발사업

4) 제16조(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) ①산업단지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자종에서 산업단지 지정권자의 지정에 의하여 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자가 이를 시행한다.

1. 국가·지방자치단체·정부투자기관·지방공기업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
2. 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단지공단

단체가 출연한 법인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,

충주시가 공동시행자 자격으로 특수목적법인에 출자하는 것은 법률상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## 2. 출자를 위한 사전절차 이행사항

### (1) 출자타당성 검토

「지방공기업법 시행령」 제67조의2 제1항5)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위해서는 타당성 검토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 충주시에서는 2009년 11월 출자 타당성검토 용역을 완료하였음.

#### ※ 출자 타당성 검토 용역

- 용역기관 : 충주대학교 산학협력단
- 용 역 비 : 2억원
- 용역기간 : 2009.1월 ~ 2009. 11월
- 용역결과 : B/C 1.06

- 
- 3. 당해 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고자 하는 자 또는 당해 개발계획에서 적합하게 산업단지를 개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
  - 4.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산업단지의 개발을 목적으로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
- 5) 제67조의2 (출자 · 출연의 타당성 검토 등) ①지방자치단체가 법 제7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 또는 출연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

## (2) 출자 심의위원회 심의

「지방공기업법 시행령」 제67조의2 제3항<sup>6)</sup>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을 위해서 출자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출자를 심의하도록 하고 있으며, 충주시에서는 지난 4월 22일 출자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출자를 승인 받은 바 있음

상기와 같이 출자를 위하여 타당성검토 및 출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득한 바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으면 출자를 위한 절차 이행은 완료되는 것으로 판단됨

### 3. 종합의견

“충주신산업단지” 조성은 고용창출, 인구증대 등으로 인한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 뿐 아니라 충주발전을 선도하고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여짐

다만, 본 개발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2,000억원의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되고 출자금으로 10억원이라는 적지 않은 시비가 투입됨은 물론, 기 조성되거나 조성중에 있는 충주 3, 4산업단지, 기업도시, 충주 첨단산업단지에 적지 않은 면적의 미분양 용지가 존재하고 있으며,

앞선 출자 타당성검토 결과 B/C가 1.06으로 사업성은 있는 것으로

6) 제67조의2 (출자·출연의 타당성 검토 등)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원, 관계전문가,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등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결과를 기초로 출자 또는 출연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.

분석되었으나 향후 사업 여건, 국내·외 경제 흐름 등에 따라 추가 출자 및 지출도 예상될 수 있어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

## 5. 질의 · 답변 요지

(1) 질의 : 기업도시 출자금은 얼마이며, 출자에 따른 이익금이 발생하였나?

답변 : 분양이 완료되고 결산을 해봐야 알 수 있음.

(2) 질의 : 기업도시 조성에 따른 이익금의 발생도 불투명한데 신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보는데?

답변 : 1차 분양결과 91%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으며, 현재도 유수기업들과 협의중임

(3) 질의 :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라 지방 산업단지의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보여짐.

답변 : 중원산단 91%, 첨단산단 82%, 기업도시 1차 91%의 분양률을 보이는 등 분양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음

(4) 질의 : 지구지정이 되면,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의제처리 되는가?

답변 :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충주시에서 할 수 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음.

(5) 질의 : 충주신산업단지 조성은 시비가 10억 출자되는 등

중요한 사업인데, 6대 의회 구성 후 추진함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이는데?

답변 : 지금 추진을 해도 2012년 착공, 2014년 완공예정임 사업 추진이 늦어질 경우 공장의 개별입지 등으로 난개발 등의 우려됨. 지금도 시기가 다소 늦은 것으로 판단됨

(6) 질의 : 시유지 등 공유지 비율이 낮고 주변 지가 상승으로 분양가가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는데?

답변 : 기업도시와 기반시설을 공동이용하고, 예정지 대부분이 임야로 구성되어 있어 조성원가는 크게 높아지지 않을 것임. 경쟁력이 있음.

## 6. 심사결과

- 충주 신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 설립에 따른 자본금 출자 동의안 : 원안가결